

서울무역전시장 관리·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02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년 8월 14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무역전시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전시 및 유통 판로를 개척하고, 일자리창출 등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운영 중인 서울시 유일의 공공전시장으로서 중소기업 육성·지원 시설임
- 나. 서울산업진흥원이 재단법인 설립 취지에 따라 2005년 10월부터 서울무역전시장을 관리·운영 중임
- 다. 서울무역전시장 운영 위탁기간은 3년마다 갱신하고 있으며, 금회 위탁기간이 '17.9.30자로 만료됨
- 라. 수탁기관의 설립 취지를 고려하고 위탁사무의 전문성·효율성도모를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설개요
 - 위치 :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(대치동)
 - 규모 : 부지면적 35,421.2 m^2 , 연면적 11,019.11 m^2
 - 주요시설 : 전시장(7,948.69 m^2 , 3개 전시장 420부스) 및 부대시설
 - 개관일 : '99. 5. 4. / 서울산업진흥원 위탁 운영('05.10.~)

나. 추진근거

-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-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

다. 추진경과

- '99.05.04 : 건물 준공, KOTRA 무상 대부('99.5~'05.9)
- '05.06.02 : 서울무역전시장 부지반납 및 가설건축물 기부채납 합의
(서울시/서울산업진흥원 ⇔ 산업자원부/KOTRA)
- '05.10.01 : 서울시 부지인수 및 기부채납 완료, 운영개시
- '14.10.01 : 위탁운영 연장(~'17.9.30, 4회차)

라. 위탁내용

- 위탁사무 : 서울무역전시장 관리·운영
- 위탁기간 : 2017. 10. 1 ~ 2020. 9. 30(3년)
- 위탁유형 : 수익창출형
- 위탁금액 : 시설운영 수입금으로 전시장 등의 운영목적에 사용
- 위탁범위
 - 전시회 유치·개최 및 사용자 관리
 - 전시장 시설 관리·운영
 - 기타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등

마. 재계약 사유

- 전시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
 - 서울산업진흥원은 '05.10월부터 위탁 운영해 오고 있어 전시컨벤션 분야에서 다년간 노하우를 축적했고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함

- 서울산업진흥원의 고유사업인 컨벤션 운영 및 중소기업 판로개척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 사업과 연계추진으로 시너지 창출효과 극대화
-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연속 수상하는 등 운영실적 우수
 - 전시장 최초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4년('13~'16년) 연속 수상하는 등 전시컨벤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

바. 주요 운영성과

- 서울시 신성장동력산업 관련 전시회 발굴·유치
 - 콘텐츠, 디자인/패션, 관광분야등 전시를 통한 차세대 성장동력 활성화
-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외부기관 제휴 기획전시회 확대
 - 민관협치를 통한 대표 중소기업 판로지원 전시회 'SETEC 메가쇼'구축
- 서울시 유일의 중소기업 전문 전시장으로서의 공신력 강화
 -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전시컨벤션 부분 4년연속 수상 등
- 전시회 개최 및 운영실적

(단위: %, 백만원)

구 분	2014	2015	2016	평균
개최건수	86	79	81	82
가 동 률	69.3	67.1	68.9	68.4
수 입	3,369	3,404	3,610	3,461
지 출	3,225	2,784	2,817	2,942
수 익	144	620	793	519

○ 연도별 개최실적 비교

구 분	개최전시회		참가기업수			참관객수		
	개최수(회)	비율(%)	국내(개사)	해외(개사)	합 계(개사)	국내(명)	해외(명)	합 계(명)
'14년	86	34.9	6,647	1,232	7,879	1,043,400	11,000	1,054,400
'15년	79	32.1	6,434	1,420	7,854	1,127,687	14,766	1,142,453
'16년	81	33.0	6,570	1,408	7,978	1,156,040	20,441	1,176,481
평 균	82	-	6,550	1,353	7,903	1,109,042	15,402	1,124,444
합 계	246	100	19,651	4,060	23,710	3,327,127	46,207	3,373,334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

제3조(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)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(이하 "지원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 <신설 2016.5.19.>

1. 중소기업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
2. 중소기업의 육성·지원에 관한 사항
3. 중소기업 관련 연구·개발에 관한 사항
4.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
5. 중소기업 관련 설명회·상담회 및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중소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5조(관리·운영의 위탁 등) ① 시장은 지원시설에 대한 관리·운영의 전문성 확보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·운영 능력이 있는 다른 행정기관·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9. 서울무역전시장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[전문개정 2017.7.13.]

제12조(재계약) ①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,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5.14., 2015.7.30.>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, 최근 수탁기간 동안에 시장이 시행한 제16조의 지도·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18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,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.

부칙 <제6567호, 2017.7.13>

제2조(의회동의 절차의 특례)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의 경우 제4조의3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○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지방자치법」, 「민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산업을 진흥하고 중소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을 설립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5조(재단의 사업) ① 재단은 산업 진흥 및 중소기업 육성·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9. 중소기업지원시설의 건립 및 관리·운영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산업거점조성반 SETEC개발팀 강성한 (☎2133-4848)